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542호 2021년 6월 7일(월)

경 상 북 도

■ 규 칙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79호) 7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80호) 9
-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81호) 11

■ 고 시

-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86호) 19
-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87호) 21
-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88호) 32
- 영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89호) 34
-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90호) 37

■ 공 고

-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7호) 40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8호) 55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9호) 65
-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10호) 75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17호) 84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3호) 89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4호) 90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5호) 91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7호) 135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운영위탁 사실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30호) 136
- 「대구-광주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31호) 137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32호) 148

시 군

■ 고 시

- 안동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1-176호) 153
-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1-177호) 160
-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1-100호) 165
- 군위 군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군 고시 제2021-49호) 169

■ 공 고

- 군위 군계획시설(소로1-아1호, 소로2-68A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공고 제2021-431호) 173
- 공인 신조 공고
(울진군 공고 제2021-814호) 197

기 타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200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6월 7일

경상북도 규칙 제2979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 를 “1퍼센트” 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용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6월 7일

경상북도 규칙 제2980호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기타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6월 7일

경상북도 규칙 제2981호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로,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대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

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지원국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

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2. 물품운용관: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의 대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물품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4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제14조의2제4항 관련)**1. 물품의 평가액**

$$\text{○ 물품평가액} = \frac{\text{취득단가}}{\text{내용연수}} \times \text{사용연한}$$

$$\text{○ 사용연한} = \text{내용연수} - \text{사용연수}$$

※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text{○ 대부료} = (\text{물품평가액} \times 6\%) \times \frac{\text{대부일수}}{365}$$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지 제24호서식]

물품 대부계약서

○ 물품의 표시

구입 일련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원)

위 물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대부자')와 ○○○(이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8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 금구온천 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행위제한내용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①	금구리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 일원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16,043	경산시고시 제2001-21호 (2001.6.21)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금구리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폐지	- 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폐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187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546.0ha(감 11.2ha)
 - 농업진흥구역 : 124,133.4ha(감11.2ha)
 - 농업보호구역 : 25,412.6ha(변동없음)

2. 농업진흥지역 증감 내역

(단위 : ha)

구분	시군	계	농업진흥지역		증 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경북도		149,546.0	124,133.4	25,412.6	감11.2
해제	고령군	4,329.6	3,970.1	359.6	감11.2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참고 2>> 별도 기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1》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1. 6. 7.기준

(단위 : ha)

시군	계		시군	계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546.0	124,133.4	25,412.6					
포항시	7,570.5	6,466.2	1,104.3	의성군	15,292.3	12,517.0	2,775.3	
경주시	10,271.7	8,431.0	1,840.8	청송군	3,872.8	2,955.5	917.3	
김천시	7,877.0	6,863.7	1,013.3	영양군	2,222.5	1,897.2	325.3	
안동시	7,335.8	6,338.8	997.0	영덕군	3,568.1	3,122.4	445.6	
구미시	8,074.2	7,306.2	768.0	청도군	6,120.1	4,375.8	1,744.4	
영주시	5,599.1	4,811.0	788.1	고령군	4,329.6	3,970.1	359.6	
영천시	10,270.7	7,110.5	3,160.1	성주군	7,193.0	6,005.1	1,187.9	
상주시	16,434.7	14,244.0	2,190.7	칠곡군	2,078.1	1,695.8	382.3	
문경시	6,128.7	5,015.2	1,113.5	예천군	9,785.8	8,571.9	1,214.0	
경산시	5,505.4	3,986.6	1,518.8	봉화군	3,155.1	2,661.9	493.2	
군위군	5,023.2	4,287.0	736.2	울진군	1,837.4	1,500.6	336.8	

《참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증감일 : 2021. 6. 7.

(단위 : ha)

시군	구분	위 치	사 유	증감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03	△11.2	-	-
고령군	해제	성산면 득성리 56번지 외 102필지	동고령IC 물류단지 조성	△103	△11.2	-	-
		이 하	여 백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03 필지		120,578	112,346	112,346	112,346	0	
1	고령	성산	득성	16	답	1,606	1,547	1,547	1,547		
2	"	"	"	17	답	1,574	1,533	1,533	1,533		
3	"	"	"	18	답	2,552	2,469	2,469	2,469		
4	"	"	"	19	답	659	626	626	626		
5	"	"	"	19 - 1	답	954	954	954	954		
6	"	"	"	21	대	660	633	633	633		
7	"	"	"	21 - 1	답	2,156	2,156	2,156	2,156		
8	"	"	"	22	답	2,279	2,225	2,225	2,225		
9	"	"	"	23	답	1,945	1,942	1,942	1,942		
10	"	"	"	24	답	1,073	1,073	1,073	1,073		
11	"	"	"	25	답	2,483	2,483	2,483	2,483		
12	"	"	"	26	답	547	547	547	547		
13	"	"	"	27	답	657	657	657	6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14	고령	성산	득성	28	답	2,966	2,966	2,966	2,966		
15	"	"	"	29	답	1,003	1,003	1,003	1,003		
16	"	"	"	29 - 1	답	1,996	1,996	1,996	1,996		
17	"	"	"	30	답	513	513	513	513		
18	"	"	"	30 - 1	도	84	84	84	84		
19	"	"	"	30 - 2	구	256	256	256	256		
20	"	"	"	50	답	1,683	1,683	1,683	1,683		
21	"	"	"	51	답	1,047	1,047	1,047	1,047		
22	"	"	"	52	답	1,224	1,224	1,224	1,224		
23	"	"	"	53	답	2,028	2,028	2,028	2,028		
24	"	"	"	53 - 1	답	586	586	586	586		
25	"	"	"	54	답	2,232	2,232	2,232	2,232		
26	"	"	"	55	답	1,319	1,319	1,319	1,319		
27	"	"	"	56	답	2,022	2,022	2,022	2,022		
28	"	"	"	56 - 1	답	625	625	625	625		
29	"	"	"	57	답	1,526	1,526	1,526	1,52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30	고령	성산	득성	58	답	2,491	2,491	2,491	2,491		
31	"	"	"	59	답	1,335	1,335	1,335	1,335		
32	"	"	"	60	답	685	685	685	685		
33	"	"	"	61 - 1	답	1,101	1,101	1,101	1,101		
34	"	"	"	61 - 2	답	1,230	1,230	1,230	1,230		
35	"	"	"	62	답	2,513	2,501	2,501	2,501		
36	"	"	"	62 - 1	도	27	27	27	27		
37	"	"	"	62 - 2	구	42	42	42	42		
38	"	"	"	75	잡	1,292	1,292	1,292	1,292		
39	"	"	"	75 - 1	답	65	65	65	65		
40	"	"	"	76	답	3,149	3,149	3,149	3,149		
41	"	"	"	78	답	3,038	3,038	3,038	3,038		
42	"	"	"	78 - 1	답	3,049	3,049	3,049	3,049		
43	"	"	"	78 - 2	답	390	390	390	390		
44	"	"	"	78 - 3	답	1,930	1,930	1,930	1,930		
45	"	"	"	78 - 4	답	2,036	2,036	2,036	2,0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46	고령	성산	득성	78 - 5	구	143	143	143	143		
47	"	"	"	84	답	842	842	842	842		
48	"	"	"	85	답	2,191	2,191	2,191	2,191		
49	"	"	"	85 - 1	답	385	385	385	385		
50	"	"	"	85 - 3	답	15	15	15	15		
51	"	"	"	86	답	993	993	993	993		
52	"	"	"	86 - 1	답	172	172	172	172		
53	"	"	"	86 - 2	답	15	15	15	15		
54	"	"	"	87	구	511	511	511	511		
55	"	"	"	88	진	858	13	13	13		
56	"	"	"	92	답	2,880	2,880	2,880	2,880		
57	"	"	"	93	답	2,957	2,957	2,957	2,957		
58	"	"	"	94	답	839	839	839	839		
59	"	"	"	95	답	1,601	1,601	1,601	1,601		
60	"	"	"	96	답	2,198	2,198	2,198	2,198		
61	"	"	"	97	답	1,774	1,774	1,774	1,77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62	고령	성산	득성	100	답	2,594	2,594	2,594	2,594		
63	"	"	"	101	잡	500	372	372	372		
64	"	"	"	101 - 1	대	600	329	329	329		
65	"	"	"	101 - 2	잡	1,578	1,578	1,578	1,578		
66	"	"	"	102	답	392	34	34	34		
67	"	"	"	102 - 1	답	1,936	1,223	1,223	1,223		
68	"	"	"	102 - 4	구	721	721	721	721		
69	"	"	"	103	답	1,175	1,175	1,175	1,175		
70	"	"	"	104	답	2,074	2,074	2,074	2,074		
71	"	"	"	104 - 1	답	392	392	392	392		
72	"	"	"	105 - 1	답	1,741	1,741	1,741	1,741		
73	"	"	"	106 - 1	대	330	330	330	330		
74	"	"	"	106 - 2	답	766	766	766	766		
75	"	"	"	107	잡	330	328	328	328		
76	"	"	"	107 - 1	답	2,814	2,814	2,814	2,814		
77	"	"	"	108 - 1	답	1,050	1,048	1,048	1,04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78	고령	성산	득성	109	잡	653	653	653	653		
79	"	"	"	109 - 1	대	459	459	459	459		
80	"	"	"	110	답	189	98	98	98		
81	"	"	"	111	답	1,042	1,035	1,035	1,035		
82	"	"	"	112	답	123	123	123	123		
83	"	"	"	171 - 18	답	66	4	4	4		
84	"	"	"	221	도	944	892	892	892		
85	"	"	"	221 - 1	구	1,372	781	781	781		
86	"	"	"	221 - 2	구	1,396	1,389	1,389	1,389		
87	"	"	"	221 - 3	구	321	140	140	140		
88	"	"	"	221 - 4	구	401	401	401	401		
89	"	"	"	222	구	2,423	1,716	1,716	1,716		
90	"	"	"	223	도	848	735	735	735		
91	"	"	"	224	구	1,027	913	913	913		
92	"	"	"	402	도	2,700	18	18	18		
93	"	"	"	402 - 7	도	12	1	1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94	고령	성산	득성	405 - 1	도	734	163	163	163		
95	"	"	"	414 - 2	도	13	13	13	13		
96	"	"	"	41	답	766	667	667	667		
97	"	"	"	42	대	626	620	620	620		
98	"	"	"	42 - 2	답	76	53	53	53		
99	"	"	"	43	답	697	697	697	697		
100	"	"	"	46	답	198	198	198	198		
101	"	"	"	46 - 1	답	203	203	203	203		
102	"	"	"	51 - 1	구	392	294	294	294		
103	"	"	"	52	도	902	716	716	716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88호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8,200	-	118,200	100.0	
계획관리지역	69,105	증) 49,095	118,200	58.5	
농림지역	49,095	감) 49,095	-	41.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성주읍 삼산리 538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49,09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성주군청 자원순환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성주군청 자원순환사업소(054-930-6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89호

영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5,095,477	-	815,095,477	100.00	
도시지역	11,453,000	-	11,453,000	1.41	변경없음
관리지역	154,512,444	증) 16,509	154,528,953	18.96	
계획관리지역	53,125,370	증) 16,509	53,141,879	6.52	
생산관리지역	12,388,737	-	12,388,737	1.52	변경없음
보전관리지역	88,490,557	-	88,490,557	10.86	변경없음
미세분	507,780	-	507,780	0.06	변경없음
농림지역	648,660,033	감) 16,509	648,643,524	79.57	
자연환경보전지역	470,000	-	470,000	0.06	변경없음

주) 기정은 경상북도고시 제2020-307호(2020.09.10) 영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영양읍 하원리 345-10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관리 지역	16,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소방서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054-68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90호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천군동 1324번지 일원에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조성을 위한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34,319	-	34,319	100.0	
	보전녹지지역	8,825	감) 8,825	-	-	
	자연녹지지역	25,494	증) 8,825	34,319	100.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경주시 천군동 1324 일원	보전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8,825	80% 이하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추위와 미 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에어 돔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
의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7호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

- (종전) 징수 → (개정) 부과징수

나. 별지 서식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다. 별지 서식의 민원관련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종전)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개정) 신분증 사본 1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chosang8355@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징수” 를 “부과징수”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평소 지방세 행정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
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검토결과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천 원)

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

○○ 시·군

과

담당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 시장·군수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000-000 / 주소

/ 전화()000-0000 / FAX()000-0000

0000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뒷 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 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탈세제보 포상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기재
-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3조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시·군청 및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 ⑤ 별지 제6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발송

[별지 제6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금 용 기 관		예금주		
계 좌 번 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 · 군수 귀하

첨 부 : 신분증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 ~ ⑦ (생 략)</p>	<p>제4조(지급대상)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부과징수-----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8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종전) 가산금 →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chosang8355@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가산금을 제외한다)” 를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p>	<p>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 -----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중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

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100분의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09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사항 등 반영하여 도세 징수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

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종전) 가산금 →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나. 별지 9호 서식(갑)의 상위법 개정 따른 서식 하단 내용 수정

- (종전) 10만원 → (개정) 30만원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chosang8355@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을 “납부지연가산세를”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갑)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 사 및 확 인 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u>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 ----- ----- 납부지연가산세를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10호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사항 등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 (종전)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 (종전) 법 제88조제4항제2호 → (변경) 법 제88조제5항제2호
- (종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변경) 「소상공인기본법」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09 Fax 054-880-2190, 이메일: chosang8355@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소상공인기본법」” 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분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부분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88조제4항제2호</u> 단서 또는 같 은 <u>법 제96조제1항제3호</u> 단서(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u>법 제88조제5항제2호</u>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한다.	제11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 ----- 「 <u>소상공인기본 법</u> 」----- ----- -----.

현 행	개 정 안
<p>5. (생 략)</p> <p>② (생 략)</p> <p>제2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5. <u>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경우</u></p> <p>6. <u>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u></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217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7.

경 상 북 도 지 사

I.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목적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변경(안)에 반영

II. 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1. 주민열람

- 열람 장소(기관) 및 의견 제출처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054-880-2139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054-420-6051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054-840-5031
영주시청	미래전략실	054-639-6063
상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54-537-7002
문경시청	기획예산실	054-550-6056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054-650-6812
봉화군청	기획감사실	054-679-6022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방법 : 경북도청(www.gb.go.kr) → 상단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주민열람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1. 6. 3.(목) ~ 2021. 6. 16.(수)

* 마감일 우편소인 인정

2.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1. 6. 17.(목) 14:00

○ 장 소 : 영주 소수서원 충효교육원(영주시 소백로2740)

* 일시·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가 알림)

○ 주요내용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발표
- 주민 등 참석자 의견 수렴

Ⅲ.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개요

1.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30년까지

2. 계획의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7개 시·군) :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강원(5개 시·군) :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충청북도(5개 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라남도(2개 군) : 곡성군, 구례군
- 경상남도(4개 군)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3. 계획내용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 구체적 내용은 열람 기관에서 확인
- 부문별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등 집행관리 방안

Ⅳ. 공청회 참석 유의사항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2m(최소 1m이상)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054-880-2139) 또는 해당 시·군 열람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 민 열 략 의 건 서

◆ 건 명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분 야	의 건

제출자 기관명 또는 주소 :

성 명 :

연락처 :

※ 소중한 의견은 검토 후 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07	신성이엔에스 주식회사 (김영덕)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농공길 135	2021.6.3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06	주식회사 민이앤씨 (김수정)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542, 1층	2021.6.3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5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및 자치법규 조문 개정
- 현행 조례 조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표기 순화(안 제2조제3항)

-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5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별표 항목 번호 현실에 맞게 수정(안 별표 2)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안 별표4)
 -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215 Fax 054-880-2190, 이메일: cih06257@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수인을 열기하여” 를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

는 수급자가”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조”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특수임무수행자” 를

“특수임무유공자” 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증 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3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라. 공사 중 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확인원	1통	3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바.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2.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다. 경력(운전, 무사고)증명	1통	500원
라. 운전자 사고 및 범규위반 기록확인 신청서	1통	500원
3. 그 밖의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인·허가·등록·지침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나.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 관계		
가. 농지보전관계 다년생 식물재배 신청	1건	500원
나. 잠전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원
다.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원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2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기계(전자)공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1,000원
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 및 변경신청	1건	1,000원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1건	500원
라. 공장입지 지정 신청	1건	1,000원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4. 건설기계		
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000원
나.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000원
5. 보건사회위생 관계		

구 분	기 준	요 액
가.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나. 사설모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증의 재교부	1건	500원
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의 변경	1건	40,000원
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6. 문화예술 관계		
가. 각본 등 심사신청	1건	1,000원
나. 영사기사 면허시험 응시신청	1건	2,000원
다. 영사기사 면허신청	1건	1,000원
라.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마. 사회단체 지부 등록신청	1건	6,000원
바. 사회단체 지부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사.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	1건	500원
아. 출판사 등록	1건	500원
자.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작업 또는 배부업 신고	1건	20,000원
차.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부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체육시설업 관계		
가. 골프장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3) 등록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8. 지적 관계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9. 전기공사업 관계		
가.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1건	30,000원
다. 공사업의 승계 신고		
(1) 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분할	1건	30,000원
(2) 공사업의 상속신고	1건	5,000원
라.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양도, 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다만, 제9호나목 및 다목의 수수료는 공사업자 단체 에서 현금 징수함.	1건	5,000원
10. 전력기술 관계		
가. 설계업의 등록신청		
(1) 종합	1건	50,000원
(2) 전문1종	1건	30,000원
(3) 전문2종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나. 설계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 종합	1건	45,000원
(2) 전문1종	1건	25,000원
(3) 전문2종	1건	15,000원
다. 감리업의 등록신청		
(1) 종합	1건	50,000원
(2) 전문	1건	30,000원
라.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 종합	1건	45,000원
(2) 전문	1건	25,000원
마. 설계·감리업의 변경 등록		
(1) 재발급	1건	5,000원
(2) 변경등록신고(기술인력 변경 제외)	1건	5,000원
11. 승강기 관계		
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나.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1건	20,000원
다.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별표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제2조제5항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징수구분)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u>수인을 열기 하여</u>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p> <p>④·⑤ (생 략)</p>	<p>제2조(징수구분)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 <u>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u>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 증명 등</p> <p>2. ~ 5. (생 략)</p> <p>6.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p>	<p>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 -----</p>

현 행	개 정 안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 -----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 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 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수임무유공자----- -----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증명】			【증명】		
2. 회계에 관한 증명			2. 회계에 관한 증명		
(9) 공유재산대부(신규) 신청	1통	5,000원	<삭제>		
(10) 공유재산대부(연장) 신청	1통	5,000원	<삭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2. 농수산 관계			2. 농수산 관계		
(6) 근해어업 허가	1건	2,500원	다.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원
(7)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삭제>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신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6)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삭제>		
(8) 주유소	1건	20,000원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8) 용제판매소·부생연료류 판매소	1건	1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신설>			(3)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신설>			(4)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현 행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5. 보건사회위생 관계 <u><신 설></u>			5. 보건사회위생 관계 바. <u>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 교부 신청</u>	1건	800원
7. 문화예술관계			6. 문화예술 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u><삭 제></u>		
(2)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u><삭 제></u>		
11. 전기공사업 관계			9. 전기공사업 관계		
(3) <u>공사업의 승계 신고</u>			다. <u>공사업의 승계 신고</u>		
(가) <u>공사업의 양도·양수</u>	1건	30,000원	(1) <u>공사업의 양도·양수·합 병·분할</u>	1건	30,000원
(다) <u>공사업의 법인합병·분할</u>	1건	30,000원	<u><삭 제></u>		
(4) <u>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재교부</u>			라. <u>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재교부</u>	1건	5,000원
(가) <u>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에 따른 재교부</u>	1건	5,000원	<u><삭 제></u>		
(나) <u>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 게 된 경우 또는 기제 난이 부족함에 따른 재 교부</u>	1건	5,000원	<u><삭 제></u>		
13. 승강기 관계			11. 승강기 관계		
(1) 승강기보수업 등록	1건	50,000원	가. <u>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u>	1건	50,000원
(2) 승강기보수업 변경 등록	1건	20,000원	나. <u>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u>	1건	20,000원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다. <u>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u>	1건	4,000원

[별표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4] 전자파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별표4] 전자파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

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

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

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종류	표준금액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종류	표준금액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종류	표준금액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종류	표준금액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종류	표준금액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종류	표준금액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종류	표준금액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 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종류	표준금액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종류	표준금액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종류	표준금액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종류	표준금액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종류	표준금액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종류	표준금액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종류	표준금액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종류	표준금액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종류	표준금액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2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의거 폐업처리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역
150382	다함전기통신 (손수호)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65, 2층	등록취소

2. 처분일자 : 2021. 6. 3(목)

3.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1항 제15호

경상북도공고 제2021-1230호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운영위탁 사실 공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은
영의 위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위탁현황

1. 위탁시설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2. 위탁기간 : 3년(2021.07.01.~2024.06.30.)
3. 위 탁 자 :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장
4. 수 탁 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5. 위탁업무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2개소) 관리·운영 사무.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231호

「대구-광주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7.

경 상 북 도 지 사

I.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목적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II. 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1. 주민열람

- 열람 장소(기관) 및 의견 제출처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054-880-2139
구미시청	기획예산과	054-480-6502
영천시청	정책기획실	054-330-6047
경산시청	기획예산과	053-810-5064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054-950-6012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방법 : 경북도청(www.gb.go.kr) → 상단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주민열람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직접 또는 전자메일(odyssey1@korea.kr) 제출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1. 6. 10.(목) ~ 2021. 6. 24.(목)

2.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1. 6. 25.(금) 14:00 ~

○ 장 소

-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hannel/UCC83bXvCCKEBCQaVHGn5QBw/videos>)

※ 온라인 참여방법 :

- ① 주소입력을 통한 접속
- ② 유튜브에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검색

- 오프라인 :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병행 추진하고, 공청회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실시간 의견제출 가능

-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신청 : 일반인 50명 한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현장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며, 참석희망자는 광주광역시 업무담당자 이메일(pch8617@korea.kr)로 공청회 참석 신청서 제출
 - 공청회 참석 신청은 2021. 6. 14.(월) 09:00 이후 제출한 사람에 한해 참석대상자 선정(이메일 신청 선착순으로 참석자 선정하며, 참석대상자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회신 안내)
 - 공청회 참석 신청서 양식 : 붙임2 참조
- 주요내용 :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설명, 토론 등
- 주 최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Ⅲ.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개요

1.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

2. 계획의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4개 시·군 :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 광주광역시 5개 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구광역시 8개 구·군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전라남도 4개 시·군 :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3. 계획내용 :

- 대구·광주권 일반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지역현황·상위계획·관련법규 등)
- 대구·광주권의 기능 및 역할 정립(2030 장기비전 제시 등)
- 대구·광주권 발전 기본구상

IV. 기타사항

1.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주민열람 기간 내 또는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이에 따른 온라인 참석을 권장합니다.
 3.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4.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출입 불가), 2m(최소 1m 이상)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열람 등을 위하여 시군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054-880-2139) 또는 해당 시·군 열람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열람 의견서 제출 양식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의견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제출의견)			

상기와 같이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붙임 2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신청서 양식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신청서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상기와 같이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붙임 4

관련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
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23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한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가림(주)	권미향	경북-대지 2017-0035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김천은천니아(주)	김정숙	경북-주택 2015-0084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대덕건설(주)	권태정	경북-주택 2005-0016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주)대봉주택건설	도성권	경북-대지 2015-0036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우일건설(주)	황청관	경북-대지2 014-0018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카시아(주)	이범석	경북-주택2 018-0013	경고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주)다채움	김준호	경북-주택2 015-0088	경고	기술자변경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	
(주)한주산업개발	임승철	경북-주택2 018-0011	경고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주)내성개발	박종근	경북-대지2 017-0024	경고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주)가람	김진정	경북-주택2 019-0021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주)거산	김정원	경북-주택2 020-0025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검무건설(주)	김선태	경북-대지2 019-0005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주)경성주택	김한주	경북-주택1 989-0001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금화주택건설(주)	양현선	경북-주택2 016-0039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보성산업개발(주)	문상길	경북-주택2 013-0015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주)세광산업개발	김상현	경북-주택2 014-0028	영업정지 3월 ('21.6.24. -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기술자없음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처분사항	위반내용	비고
세미주택건설	이범관	경북-주택2 014-0023	영업정지 3월 (‘21.6.24.-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 기술자없음	
(주)이레토건	이정태	경북-주택2 017-0021	영업정지 3월 (‘21.6.24.-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 기술자없음	
(주)태성개발건설	전병수	경북-주택2 009-0002	영업정지 3월 (‘21.6.24.-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 기술자없음	
(주)테라이엔씨	김진금	경북-주택2 016-0013	영업정지 3월 (‘21.6.24.-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 기술자없음	
효민개발(주)	이창수	경북-주택2 014-0020	영업정지 3월 (‘21.6.24.-9.23.)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 기술자없음	
(주)디앤에스 주택건설	박성준	경북-주택2 019-0011	영업정지 3월 (‘21.6.24.-9.23.)	- 기술자 없음	

나. 처분사유 : 주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다.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1

라. 처분일자 : 2021. 6. 24.

2. 주택법 위반 행정처분 중

가. 경고처분 대상인 경우, 해당 미비사항(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등)을 보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사항으로 인해 경고 누적이 발생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따라 차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처분의 원인이 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기술자 없음)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상북도회(☎ 053-753-6393)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군

고 시

안동시 고시 제2021-176호

안동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연접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안 동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의 실효 및 실효에 따른 연접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1) 교통시설

가) 대로

■ 동지역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3	8	25	보조 간선 도로	1,375	송현동 대로1-6	노하동 대로1-13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변 경	대 로	3	8	25	보조 간선 도로	58	송현동 대로1-6	송현동 1159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나) 중로

■ 동지역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3	20~23	집산 도로	1,660	송현동 대로1-5	노하동 중로3-8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변경	중로	1	23	7~20	집산 도로	1,036	송현동 429-7	노하동 136-23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1	24	20~25	집산 도로	1,560	송현동 대로1-6	노하동 대로1-13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변경	중로	1	24	20~23	집산 도로	416	송현동 대로1-6	노하동 중로1-23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중로	1	25	20	집산 도로	412	송현동 대로3-8	노하동 중로1-24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실효

■ 송천동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	20	집산 도로	1,125	송천동 1100-2 중로1-21	송천동 849-8 중로1-21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변경	중로	1	22	20	집산 도로	270	송천동 879-2 소로1-10	송천동 849-8 중로1-21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38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 일직면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775	일직면 운산리 대로1-1	일직면 운산리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41호)	
변경	소로	3	1	6~7.5	집산도로	797	일직면 운산리 중로1-4	일직면 운산리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41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중로	1	3	20	집산도로	93	일직면 운산리 중로1-2	일직면 운산리 소로1-2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41호)	실효

다) 소로

■ 길안면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456	길안면 천지리 대로3-3	길안면 천지리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42호)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268	길안면 천지리 소로3-20	길안면 천지리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2001.06.07. (안고 제42호)	미집행 구간의 실효

라) 주차장

■ 동지역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6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송천동 1053일원	1,479	감) 1,479	-	2001.06.07 (안고 제38호)	실효

2) 공간시설

가) 공원

■ 동지역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9	송천제1 공원	어린이 공원	송천동 1135일원	1,806	감) 1,806	-	2001.06.07 (안고 제38호)	실효
폐지	32	송천제 4공원	어린이 공원	송천동 860일원	1,850	감) 1,850	-	2001.06.07 (안고 제38호)	실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소로

■ 송천동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	10	집산도로	205	중로1-22 송천동87 7	소로1-11 송천동885	일반도로		2001.09.04. (안고 제67호)	
변경	소로	1	10	10	집산도로	205	중로1-22 송천동87 6-4	소로1-11 송천동885 -10	일반도로		2001.09.04. (안고 제67호)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가각부 변경

■ 일직면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56	운산리 54-15 소로1-2	운산리 547-72 중로1-2	일반도로		1976.07.20. (경고 제136호)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157	운산리 543-57 소로1-2	운산리 543-89 중로1-2	일반도로		1976.07.20. (경고 제136호)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연장

■ 길안면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319	천지리 대로3-3 호선	천지리 소로3-19	일반도로		2001.06.07. (안고 제42호)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319	천지리 소로2-14 호선	천지리 소로3-19	일반도로		2001.06.07. (안고 제42호)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가각부 변경

3. 실효일자 및 실효에 따라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지형도면 고

시일 : 2021. 6. 7.

4.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5.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고시 제2021 - 177호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으로 결정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안 동 시 장

I.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안동시 고시 제2010-22호(2010.5.10.)로 결정고시 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지적 합필 및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과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문화시설	임하면 천전리 240 일원	57,479	감) 1,149	56,330	2010.05.10. (안동시고시 제2010-22호)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면적 감소 - A=57,479m² → 56,330m² 감) 1,14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측량 결과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시설 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변경(결정) 도면 : 게재생략

Ⅲ.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 사업의 명칭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세부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부지 지적 합필 및 분할측량에 따른 사업면적·토지
조서 변경 및 부속건축물 양성화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금회 사업시행면적 : 313.65m²
- 공사현황
 - 메모리얼지구 : 물품창고, 기계실 2동
 - 체험지구 : 교육장, 체험장, 운영부스, 창고 등 6동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주 소 :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2

6.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성명	
1	임하	천전	84-2	전	542	516	공	안동시			
2	임하	천전	84-4	전	152	137	국	국토 교통부			
3	임하	천전	86-1	대	13,256	13,256	공	안동시			
4	임하	천전	87	대	502	502	공	안동시			
5	임하	천전	240	대	38,499	38,499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2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6	임하	천전	253-4	대	641	359	국	국토 교통부			
7	임하	천전	1088	구	258	258	국	농림축산 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성명	
8	임하	천전	산49-1	임	3,935	158	국	국토 교통부			
9	임하	천전	산240	구	2,645	2,645	국	국토 교통부			
합계			9필지		60,430	56,330					

IV. 관계도서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054-820-2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1-10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금구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온천의 개발·이용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의 금구온천 온천공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금구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폐지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금구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 광 휴양형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일원	16,043	감)16,043	-	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폐지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계	16,043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15,007	93.5	-	-	
공공시설용지(도로)	1,036	6.5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명	가 구			비 고
			위치	면적(m ²)	구성비(%)	
기정	계		-	16,043	100.0	
	A1	관광휴양시설용지	-	16,043	100.0	
변경	계		-	-	-	
	-	-	-	-	-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일원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15항 숙박시설 - 제16항 위락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4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 타 목의 시설 - 제16항 위락시설 중 가, 나 목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변경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계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고시정보
(<http://www.eum.go.kr/web/gs/gv/gvGosiList.jsp>)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군위군 고시 제2021 - 49호

군위 군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3번지 일원 『군위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위 군관리계획(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 6. 7.

군 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써 군위 종합체육시설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604	내량리 9-1도	내량리 420-2도	일반 도로	-	군위군고시 제2016-7호 (2016.2.18.)	
변경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605	내량리 9-1도	내량리 420-2도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5	중로 2-5	• 도로 선형 변경 - L = 604m → 605m 증 1m	• 현황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체육시설	군위 종합체육시설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	128,192	감) 1,842	126,350	군위군고시 제2016-7호 (2016.2.18.)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군위 종합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면적 변경 - A = 128,192m² → 126,350m² 감) 1,84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5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면적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군위군청 지역활력과(054-380-624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공 고

군위군 공고 제2021 - 431호

군위 군계획시설(소로1-아1호, 소로2-68A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59번지 일원 ‘군위 군계획시설(소로1-아1호선, 소로2-68A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를 위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군위읍사무소 및 군위군청 지역활력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군 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 도로(소로1-아1호, 소로2-68A호)개설사업
- 명칭 : 이지스카이CC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1-아1호선 : 폭원 8~10m, 연장 1,293m
- 소로2-68A호선 : 폭원 8~11m, 연장 17,640m 중 공사구간 15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식회사 이지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박 현 철
- 법인등록번호 : 174311 - 0004707
- 주소 :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흥1길 48-148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05월 31일
- 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05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기간 : 2021. 06. 07. ~ 2021. 06. 22.까지
- 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군위읍사무소
- 관계서류 : 게재생략(관계서류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군위군청 지역
활력과, 군위읍사무소에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의견내용 : 사업시행 기간변경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의견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지역활력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로1-아1호선)

[참고]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위	군위	대흥	336-2	도	462	66	m ²	군위군			
2		"	"	336-4	도	38	14	"	대구 남구 이천로19길 68 102동 1102호 (이천동 교대역월드메르디앙)	손*미		
3		"	"	337-3	도	33	10	"		국(국토부)		
4		"	"	337-4	도	120	120	"		경상북도		
5		"	"	338-4	도	17	17	"		국(국토부)		
6		"	"	358-1	답	11	11	"		경상북도		
7		"	"	338-5	도	75	52	"		경상북도		
8		"	"	341-5	전	99	92	"	군위군 군위읍 대흥동 545	구*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				341-6	전	132	41	"	군위군 군위읍 대흥동 556	박*수				
10				341-1	전	2,103	16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11				173-2	도	5,151	11	"		국(국토부)				
12				338-6	전	10	5	"		군위군				
13				338-1	전	933	436	"	군위군 군위읍 대흥1길 10	홍*식				
14				358	담	2,009	644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군위군 군위읍 대흥1길 10	이*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357-3	답	651	264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군위군 소보면 대흥동 866	(주)우리 자산신탁 홍*구				
16				359	답	1,110	1,110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17				산98	도	3,604	365	"	군위군 군위읍 대흥1길 9-10	국(국토부) 홍*식				
18				361	진	288	288	"	대구시 동구 아양로39길 16.1-112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3 109-103	김*조 홍*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18	군위	군위	대흥	361	전	288	288	m ²	대구시 동구 동춘로 48-1	이*화			
									대구시 북구 동천로24길 12 207-302(부영그린 타운)	홍*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89번길 32, 562-801	홍*아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2길 16-1	홍*인			
									경기 파주시 운정로 2, 105-104	홍*옥			
									서울 동작구 서달로2길 29 105-305 (청호아파트)	홍*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대전시 서구 구봉산북로 165 315-102 (다온숲3단지)	홍*아				
									서울시 성동구 매봉길 50 108-202	홍*수				
19			산12-1	임	3,202	3,202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0			산13-15	임	5,074	5,074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1	군위	군위	365	전	433	433	m ²		군위군 소보면 대흥동 878	홍*철				
22			364	과	497	497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3			산13-16	임	583	583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 1102-207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홍*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24				364-1	과	630	14	"	군위군 소보면 대흥동 796	홍*구					
25				산104	구	165	47	"	화성시 동탄 순환대로22길14 1226동803호 (청계동 대원칸타빌포레지움)	임*혜					
26				산13-17	임	1,140	1,140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7				산13-4	임	645	645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8				산15-1	임	443	443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29				536	전	241	241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0		"	산105	도	1,223	117	"	국 (국토부)				
31		"	산18-17	임	798	41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군위군 군위읍 대흥동 879						홍*각				
32		"	536-1	전	1,375	218	"	박*수				
33		"	산18-16	도	378	144		군위군 군위읍 대흥동 879	홍*각			
								군위군				
34		"	산17-1	도	45	45	"	군위군				
35		"	537-6	전	1,101	164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67	정*영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9		"		전	420	64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40		"	산18-21	임	1,092	60	"	군위군 군위읍 대흥동 879	홍*각			
41		"	486-1	전	1,109	224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5길 18 (평리동)	홍*찬			
42		"	486-2	도	85	85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43	군위	군위	537-7	도	40	32	m ²		군위군			
44		"	산18-27	임	523	523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45		"	산18-20	임	1,529	118	m ²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879	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2-15	홍*식		서울 송파구	압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서울 마포구 독막길 24(과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대구 북구 태전동 275-3	홍*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8-4 석수경남아너스빌10 6동710호	홍*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6 관악산현대홈타운@1 04동501호	홍*진				
								대구 남구 대명동 1871-1	홍*식				
								경기동 광명시 광명동 11-23 보은연립203호	홍*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대구 달서구 성화로 373 202동 813호 (상인동 비둘기@)	진*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25-10	홍*환				시흥시 장				압류
									울산 중구 중가로 340(교동)	근로 복지공단				가압류				
										경기 군포시				압류				
										안양 세무서				압류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64 비둘기@ 202동 813호	홍*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46		''	538-1	도	59	59	''		군위군				
47		''	산18-19	도	1,665	1,665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48	군위	대흥	산18-10	임	6,928	124	㎡	경북 안동시 임하면 평지안길 28	홍*식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8, 1211-807	홍*정				
								경기도 과천시 부림1길 48	김*현				
	군위						경기도 과천시 향촌3길 14	홍*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8길 19, 102호	홍*민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7, 517호	홍*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대구시 달서구 상인로 7-6	전*분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32번길 17-16 103호	홍*완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380 1404-603 (장미아파트)	홍*숙			
										대구시 북구 관음동로15길 9	홍*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90번길 15, 105-701	홍*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79번길 27 602-1001	홍*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9		''	576-3	도	401	401	''		군위군					
50		''	576-2	전	461	356	''	대구 남구 대명동 791-10 203호	심*수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51		''	576-5	도	55	55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52		''	산18-18	도	324	324	''	대구 남구 대명동 791-10 203호	심*수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53		''	576-1	답	2,139	190	m ²	대구 남구 대명동 791-10 203호	심*수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54		''	산18-1	임	33,190	217	''	대구 북구 국우동 1110-3 칠곡현대@ 103동 305호	홍*표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5		"	산18-13	도	365	365	"		군위군					
56	군위	군위	산89	구	397	215	m ²		국(국토부)					
57		"	937-9	구	16,199	253	"		국(농림부)					
58		"	598-1	전	153	63	"	대구 달서구 송현동 1040-6	심*훈					
		"	597-4	유	376	255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59		"	597-4	유	376	255	"	군위군 소보면 대흥1길 14-45	박**락					
60		"	597-2	유	704	48	"	군위군 소보면 대흥1길 14-45	박**락					
61		"	597-3	도	654	587	"		군위군					
62		"	597-6	도	189	189	"	군위군 소보면 대흥1길 14-45	박**락					
63		"	599-4	도	121	121	"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225-4	김*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29길 17, 403호	심*표						
										대구시 동구 송라로 16길 81-24	심*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덕양길 66-70	심*규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95 106-1002	심*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66, 101-1403	심*욱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41 619-2601	심*식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612-706	심*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64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225-4	김*순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29길 17, 403호	심*표						
										대구시 동구 송라로 16길 81-24	심*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덕양길 66-70	심*규						
				599-1	유	1,423	154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95 106-1002	심*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66, 101-1403	심*욱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41 619-2601	심*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612-706	심*향					
65		"	597-1	유	364	65	"		군위군 군위군 대흥1길 14-45	박**라					
66		"	937-8	구	2,478	71	"			국(농림부)					
67		"	625-2	도	438	292	"			군위군					
68		"	626-1	유	535	409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69		"	626-3	도	100	100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70		"	671-1	도	2,023	129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67	정*영					
71		"	952-2	구	5,126	731	"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2		"	671-2	도	10	10	"		군위군			
73		"	956-2	도	3,139	714	"		국(농림부)			
74		"	669	답	2,272	326	"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816	심*한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 20층						(주)우리 자산신탁				
75		"	956-3	도	417	417	"		국(농림부)			
76		"	952	구	18,898	281	"		국(농림부)			
	계				142,532	27,703	m ²					

(소로2-68A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소성명	소성명	관리사항
1	군위	군위	대흥	325-1	도	139	27	m ²		경상북도				
2				331-1	도	125	78	"		군위군				
3				334-1	도	631	19	"		국토교통부				
4				340-2	도	13	5	"		군위군				
5				965-1	도	2,612	756	"		국토교통부				
6				산98	도	3,604	4	"		국토교통부				
7				336-2	도	462	433	"		군위군				
8				337-3	도	33	27	"		국토교통부				
9				338-5	도	75	6	"		경상북도				
10				319-3	도	1,941	306	"		국토교통부				
11				341-5	전	99	8	"	군위군 소보면	구*일				
		대흥동 545												
									군위군 소보면	박*수				
									대흥동 55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군	읍	리			지적면적	면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사항
12				341-6	전	132	3	"	군위군 소보면 대흥동 545	구*일					
									군위군 소보면 대흥동 556	박*수					
						9,866	1,672	m ²							
									계						

울진군 공고 제2021-814호

공인 신조 공고

울진군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거한 신조공인을 같은 조례 제 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7.

울진군수

1. 신조 공인 사용 개시일 : 2021. 6. 7.
2. 신조 사유: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3. 신조 공인 및 인영

구 분	공인명	인영	규격 및 글씨체	비고
신 조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관인		훈민정음체 2.0cm, 정방형	
신 조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정방형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6. 2.(수) 확대간부회의 시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20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 강구 - 백신접종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핵심사안 -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道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문화행사 무료 입장·관람,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등) 	감염병관리과 (全 실·국)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 세상